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67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정성국 · 엄태영 · 서천호  
이성권 · 광규택 · 김 건  
김용태 · 김대식 · 김예지  
박충권 · 박정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 2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법률지원단”을 “법률상담 등과 법률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를 “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법률상담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생략)</p> <p>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u>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u>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p> <p>5.·6. (생략)</p> <p>④ ~ ⑧ (생략)</p> <p>제21조(<u>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u>)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u>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법률 상담,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u>----- -----</p> <p>5.·6.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21조(<u>법률상담 등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u>) ① ----- ----- ----- ----- ----- -----<u>법률 상담의 제공과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 등”이라 한다)</u>을 할 수 있다.</p> <p>② 교육감은 <u>법률상담등을 위</u></p>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률상담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발생이 교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단-----  
-----  
-----.